

1. 개정이유

- 「건설기계 관리법」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용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,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중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들에 대해 신규등록을 제한(최대 2년)하여 수급조절 시행

2. 주요내용

-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 개정(안)

가.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

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제6호 덤프트럭, 제14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
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 크레인(2020. 7.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)

나. 시행일 : 2024. 1. 1

다. 수급조절 기간 : 2024. 1. 1~2025.12.31.

라. 수급조절방법

-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
 - 콘크리트믹서트럭과 '20.7.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
 -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.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%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
 -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.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%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
- 다만, 멸실, 수출, 도난,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<p>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(금지)합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가.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]의 제6호 덤프트럭,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○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(2020. 7.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) 	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----- ----- ○ ----- ----- -----
<p>나. 시행일 : 2021. 8. 1</p>	<p>나. 시행일 : 2024. 1. 1</p>
<p>다. 수급조절 기간 : 2021.8.1.~2023.12.31</p>	<p>다. 수급조절 기간 : 2024.1.1.~2025.12.31</p>
<p>라. 수급조절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: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(금지) - 다만, 멸실, 수출, 도난,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	<p>라. 수급조절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크리트믹서트럭과 '20.7.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-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.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%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

현행	개정안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.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%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○ 다만, 멸실, 수출, 도난,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